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 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정보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3.3월,
'24.3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 1)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이
지자체에게 부여되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공정위 뿐 아니라 지자체에게도 부과
- 2) 공정위 및 지자체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기존의 기관 및 단체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전자
상거래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시·도지사” 자구 수정(안 제32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문구를
축약어(“시·도지사”)로 같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3.8.25. ~ 10. 4.

3) 행정규제 : 비규제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기관이나 단체”를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이나 법인·단체”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생략)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거나 공유하게 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미리 알린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이나 법인·단체-----.</u>
제32조(보고의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u>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2조(보고의무) ----- ----- <u>시·도지사</u>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46